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30일, 김주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주영의원)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효율적인 계통 연계를 위해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 전기사업 유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신설하여 인허가 및 토지수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선로 중복 구축에 따른 국토 난개발과 비효율을 방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에게 건설 권한은 부여하되 준공 후 유지·관리 책무는 기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에게 이관하는 구조인 만큼, 한시적 법인(SPC) 청산 이후의 하자 담보 책임 소재와 공정한 자산 인계·인수 및 비용 정산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345kV 등 대용량 선로 집중화에 따른 전력계통 고장 과급 위험(N-1 상정고장)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감독 권한이 요구되며, 사업 주체 구성 시 송전사업자의 참여를 법률에 직접 명시할지 대통령령에 위임할지 등 공공성과 실무적 유연성을 조율하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